

# 2020 하계연합학술대회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일 시** 2020년 8월 27일(목) 14시~28(금) 12시
- **장 소** 8월 27일(목):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및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  
8월 28일(금): 9시~12시: 세션별 Webinar
- **주 최**  韓國保險學會  한국극리스크관리학회  한국연금학회  
 (사)한국보험법학회  KIRI 보험연구원  한국보험계리사회  
The Institute of Actuaries of Korea
- **후 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KOREAN  과민인재양성



韓國保險學會





## 목 차

● 초대 의 글 .....	1
● DAY 1. 8월 27일(목) .....	2
● DAY 2. 8월 28일(금) .....	3
●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7
● 세션별 발표논문 초록 .....	49
- 세션 I 보험 .....	51
- 세션 II 보험계리 .....	59
- 세션 III 보험법 .....	67
- 세션 IV 보험재무 .....	73
- 세션 V 보험 정책 .....	79
- 세션 VI 리스크 관리 .....	85
- 세션 VII 연금 .....	91
●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	99



## 초대의 글

보험학의 발전과 보험시장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2020년 하계연합학술대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코로나 난리 통에도 저희 연합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팬데믹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 사이버 사고, 자연재해 및 인재의 증가, 테러, 지역 갈등 심화, 글로벌급 경제 위기의 빈발 등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와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향후에도 빈발할 전망이고 이에 대한 대처 차원에서 Disaster Recovery Plan(DRP 재난복원프로그램), Business Continuity Plan(BCP 비즈니스 연속성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분명 커질 것입니다.

보험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 수단인데 보험(保險)이란 한자를 새겨 보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개인과 가정의 건강 재산 리스크, 비즈니스의 인적 물적 배상책임 리스크, 사회적 재난 리스크 등의 관리에 있어 보험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사회의 제일 보루인 셈이지요.

보험학은 응용학문입니다. 이론과 실체가 잘 융합되어야 참된 빛을 발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제반 리스크에 대한 경제적인 관리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를 실제에 적용했을 때 부각되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및 정책 개선에 반영했을 때 사회 안정 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학산관이 협동의 씨너지를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리스크 관리 사회 구축에 같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5일자로 개정 데이터3법이 시행됐는데,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출현 등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대주제가 ‘데이터3법과 보험 산업’입니다. 시의성과 중요성 차원에서 관련 학회장님들과 숙고한 끝에 마련한 테마입니다. 부디 오늘의 토론이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보험업계뿐 아니라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학술대회에서 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한국보험학회 회장 장동한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성주호  
한국보험법학회 전우현  
한국연금학회 회장 양준모  
보험연구원 원장 안철경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장 이재민

# DAY 1 8월 27일(목)

전체진행: 남상욱 교수(서원대, 한국보험학회 상임이사)

개회 및 초청특강, 연합세션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사 장동한 교수(한국보험학회 회장)
14:10-14:30	축 사 윤석현 원장(금융감독원)
14:30-15:20	초청특강 함유근 교수(건국대, 한국빅데이터학회 회장)
15:20-15:30	Coffee Break
15:30-16:10	연합세션 :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 회 이경주 교수(홍익대) 발 표 유주선 교수(강남대)
16:10-17:40	토 론 김유석 교수(연세대 의대) 김재현 교수(상명대) 정기택 교수(경희대) 정찬묵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신영선 상무(생명보험협회) 한창훈 팀장(금융감독원) (가나다순)
17:40-18:00	Q&A
18:00-18:10	연구윤리교육 (한국보험학회 편집위원회)

# DAY 2 8월 28일(금)

세션별 Webinar

세션별 논문발표

종합Q&A 포함

## 세션 I 보험

<https://cau.zoom.us/j/6941353919?pwd=aXZMS1FMN0phNmRpYUhyR0x3MS9mQT09>

회의 ID: 694 135 3919

사회 : 허연 교수(중앙대/ 제 27대 한국보험학회 회장)

09:00-09:30	2-요인 효용함수 하에서의 손실경감과 저축 발표 ; 김경선(서울대), 홍지민(가톨릭대)
09:30-10:00	심도분포적합을 이용한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산출 및 실무에서의 시사점 발표 ; 양승모(보험개발원)
10:00-10:30	Lapse and Replacement : An Evidence of Intermediary's Influence Life in Insurance 발표 ; 김석영(보험연구원), 김현수(순천향대), 백 철(한국신용정보원)
10:30-11:00	보험산업에서의 신용정보 활용사례와 과제 발표 ; 백 철(한국신용정보원), 최광석(한국신용정보원)
11:00-11:30	개정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의미와 보험업 발표 ; 윤기열(보험개발원)
11:30-12:00	한국의 보험발전과정과 경제성장 발표 ; 이순재(세종대)

## 세션 II 보험계리

<https://us02web.zoom.us/j/2646827913?pwd=QmxiYzFLVXhmZlRnlhU2gyMU8xdz09>

회의 ID: 264 682 7913

사회 : 이경주 교수(홍익대/전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

09:00-09:30	자산리스크와 보험리스크가 내재된 보험사 예금보험료율의 결정 발표 ; 이가은(성균관대), 이항석(성균관대), 송성주(고려대)
09:30-10:00	거치식연금을 활용한 퇴직계좌의 최적투자 발표 ; 장 철(보험연구원)
10:00-10:30	자산운용 및 영업의 노력과 보험상품 이자율 정책 발표 ; 이항석(성균관대), 이민해(성균관대), 하홍준(St. Joseph Univ.)

10:30-11:00	조건부다층혼합분포를 이용한 비비례 재보험료 계산 발표 ; 조재훈(영남대)
11:00-11:30	손실액의 예측: 사고 빈도 vs. 총사고액 발표 ; 안재윤(이화여대)
11:30-12:00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정한 사망률 예측 모형 비교 발표 ; 최장훈(보험연구원)

### 세션 III 보험법

<https://us02web.zoom.us/j/83267640565?pwd=U0MvaHJmT3EzRHB0c1dlS2lHOFlM2Zz09>

회의 ID: 832 6764 0565

사회 : 김선정 교수(동국대 석좌교수/전 한국보험법학회장)

09:00-09:30	보험업의 시스템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 과제 - EU GDPR 및 독일 보험업 정보보호규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 ; 지광운(충북대)
09:30-10:00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발표 ; 조규성(협성대)
10:00-10:30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보험산업 전망 발표 ; 김선희(법무법인 율촌)

### 세션 IV 보험재무

<https://us04web.zoom.us/j/75413641745?pwd=WkxpcXdoc2s2NDBzQjNzelhEV0hLUT09>

회의 ID: 754 1364 1745

사회 : 이근창 교수(영남대/ 제26대 한국보험학회장)

10:30-11:00	가계 재정구조가 보험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발표 ; 박복희(전주대)
11:00-11:30	보험사의 지속적 이익과 현금배당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발표 ; 오태형(부경대), 이병근(부경대)
11:30-12:00	시장요인이 경영자 보수에 미치는 영향 : 미국손해보험회사 사례 중심 발표 ; 한상용(보험연구원), 심증보(Univ. of Colorado Denver), 김규동(보험연구원)

### 세션 V 보험 정책

<https://us02web.zoom.us/j/5819536115?pwd=a01QZEc2dG9zbnY0cVNBT1kxZmNlZz09>

회의 ID: 581 953 6115

사회 : 조재린 부원장(보험연구원)

09:00-09: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정책 과제 발표 ; 임 준(보험연구원)
09:30-10:00	해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방안 발표 ; 노건엽(보험연구원)
10:00-10:30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발표 ; 이승준(보험연구원), 황인창(보험연구원), 김해식(보험연구원), 오승연(보험연구원), 김동겸(보험연구원)

### 세션 VI 리스크 관리

<https://us02web.zoom.us/j/5819536115?pwd=a01QZEc2dG9zbnY0cVNBT1kxZmNlZz09>

회의ID: 581 953 6115

사회 : 이상림 교수(국립목포대/ 제30대 한국보험학회 회장)

10:40-11:00	The Effects of Executive Compensation on Corporate Hedging 발표 ; 윤지연(California State Univ.)
11:00-11:20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극단적 손실 추정 모형 발표 ; 정광민(포항공대)
11:20-11:40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연안지역 재해위험관리 발표 ; 남상욱(서원대), 박상진(서울대), 이동근(서울대)
11:40-12:00	예측모형 잔차의 다변량 분포 적합을 통한 미세먼지 리스크 관리 발표 ; 송성주(고려대), 조경상(오브젠)

### 세션 VII 연금

<http://www.koreapension.org/notice/view.asp?Key=136#>

연금학회 홈 페이지 링크

사회 : 양준모(연세대/한국연금학회 회장)

09:00-09:30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하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에 따른 투자기회비용 발표 ; 이동열(한국과학기술원), 김우창(한국과학기술원)
09:30-10:00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발표 ; 김대환(동아대), 이봉주(경희대)
10:00-10:30	기업의 퇴직연금의 적립이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발표 ; 김영식(경희대), 이봉주(경희대)
10:30-11:00	신탁방식 주택연금 확대를 위한 정책적 연구 발표 ; 최경진(주택금융연구원), 전희주(동덕여대)
11:00-11:30	퇴직연금 리스크 유형과 소송리스크 대응방안 발표 ; 강성호(보험연구원), 류건식(보험연구원)



#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유 주 선 (강남대 교수)





발표자	성명	유주선		
	소속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희망 세션	보험
논문제목	한글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due to Data 3 Revisions.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정리하여 새로운 가치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p> <p>2020년 1월 9일 데이터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들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곧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p> <p>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가 보험산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금번에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을 밝히며, 더 나아가 이러한 내용들이 보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p>			
Memo				

# 데이터 3법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유주선 교수(강남대 공공인재학과)

## <목차>

- I. 서론
- II.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의 전개
- III. 데이터 3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 IV. 개정 데이터 3법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V. 결론

## I. 서론

‘21세기 원유’라고 지칭되는 빅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웹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의 지속적인 확대는 비정형 기반의 모바일 데이터를 폭증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자산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와 부가 창출되는 데이터 기반 경제(Data-Driven Economy)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 공장, 스마트 의료와 바이오 산업, 핀테크 등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는 정보화 사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정리하여 새로운 가치 정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0년 1월 9일 데이터 관련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들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2개월 만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상 강화 및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가 보험산업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우선, 데이터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 후,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며, 더 나아가 금번 개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 Ⅱ. 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의 전개

### 1. 빅데이터의 개념과 구별

#### 1)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Data)는 정보(Information)와 우선 구별되어야 한다. 객관적 사실이라는 존재적 특성이 있고, 다른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없는 순수한 수치나 기호를 의미하는 것이 데이터라고 한다면, 데이터와 상관관계 또는 패턴을 이해하거나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정보에 해당된다. 즉, 갑이라는 사람의 키가 175센티미터라고 할 때, 175센티미터는 데이터에 해당되고, ‘갑의 키가 175센티미터이다’는 정보이며, 이는 갑의 개인 정보에 해당하게 된다.<sup>2)</sup>

이와 같이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데이터 그 자체는 일련의 처리과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정보의 재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는 또 다른 정보를 위한 자료, 즉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

1) 빅데이터와 보험에 대하여는 강현구/유주선/이성남, 핀테크와 법 제2판, 씨아이알출판사, 2018, 252면 참조.

2)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급한 개선과제”, 법연, spring 제58호, 2018, 31면.

## 2)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그리고 반정형데이터

정형데이터는 즉시 통계적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만한 형태로 정리되고 가공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엑셀파일을 들 수 있는데, 각 지역별 인구통계 데이터, 의학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등이 행과 열에 맞게 정리된 자료를 정형데이터라고 한다.

형식이 정해진 정형데이터와 달리, 문자 그대로 정형화 되지 않은 동영상, 사진, SNS에 적혀 있는 텍스트 등 raw data 들은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확산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정리되지 않은 웹 문서, 이메일, 소셜 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가 주를 이룬다.

한편, 정형과 비정형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들을 반정형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반정형데이터는 비정형데이터만큼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통계분석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정제되어 있지는 않은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신문 기사나 서적의 텍스트 등이 반정형데이터의 예로 들 수 있다.

## 3) 일반 데이터와 빅데이터

일반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차이점은 데이터의 크기, 데이터의 생성주기, 정형성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고 관리, 분석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방대한 크기, 생성주기의 단기성, 데이터의 비정형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sup>3)</sup>

데이터는 대용량, 빠른 속도,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여 분석된 정보들과 다른 새로운 정보를 생성한다. 이렇게 빅데이터가 활성화되는 배경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SNS의 발달로 수많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자신의 개인정보들을 입력한다는 것에 있다. 또한, 통계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 또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sup>4)</sup>

---

3)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374면. 여기에서는 데이터의 크기(volume), 처리속도 (velocity), 다양성(variety)를 제시하면서 3V를 빅데이터의 특징으로 제시한다.

4) 김선남,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정책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7면.

## 2. 분석처리기술로서 하둡(Hadup)

빅데이터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가시킨 요인으로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SNS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의 확산 등을 들 수 있지만,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DB)나 시스템 환경에서 처리하기 힘든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 분석, 처리해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 즉, 이러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탄생한 분산시스템이 바로 ‘하둡(Hadoop)’이다.<sup>5)</sup>

하둡은 여러 개의 저렴한 컴퓨터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묶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서, 하둡 기술의 개발은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한정된 데이터 분석’, ‘비용 대비 성과의 비효율성’, ‘관련 기술이나 엔지니어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를 제공하였다.

하둡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렴하면서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하둡을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줄이면서 자사 데이터 시스템과의 호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통하여 며칠 동안 돌려야 했던 데이터도 하둡을 이용하면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하여 하둡은 빅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위한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3. 빅데이터와 기업활동

### 1)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업의 데이터 활용 확대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에 투자기회를 제공하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특징 짓는 가장 큰 부분은 기존 기술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혼재된 복잡도 높은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급분석과 예측 등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sup>6)</sup>

5) 이현종, “빅데이터 하둡 플랫폼의 활용”,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제21권 제11호, 2012, 44면 이하.

6)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기업에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 중의 하나는 마케팅 분야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서구,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마케팅적 접근”,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1호(통권 제123호), 대한경영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능력이 향상되자 기업은 현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패턴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유용한 데이터, 전혀 새로운 패턴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통계나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sup>7)</sup>

## 2) 기업의 정형데이터 활용 가능성

데이터에 의한 경영이 점점 정착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지역과 영역의 사업장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외부 소셜미디어와 달리, 경영관리용 데이터는 대부분 정형데이터로서, 대표적으로 데이터로는 제품 판매 후 수리, 고객 상담이나 불만 정도 등 애프터서비스와 관련한 데이터, 수요나 판매 또는 제고 등 유통 관련 데이터, 운송과 배당 등과 관련된 데이터, 결산이나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등의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영업 관련 사기 비용의 축소를 위하여 정형데이터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LTE활성화 이후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영업 관련 불법과 편법이 확대되어 회사의 예상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던 Y회사가 있다.<sup>8)</sup>

기존의 이상관리시스템은 부정 영업 발생을 사후에 발견·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러한 관리는 일회적인 해결은 가능하나 동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나 변형되거나 새로운 종류의 이슈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하둡 클러스터(Hadoop Cluster)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은 명의도용, 대출사기, 소액결제 후 재판매 등 이상 상황에 대한 추정 규칙을 보강하고, 가입자나 단말기 위치 등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업 관련 불법이나 편법으로 인한 기업의 예상손실을 감액시킬 수 있고, 사기비용을 줄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학회, 2015, 25면 이하.

7) 최창희/홍민희,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Kiri 보험연구원, 2018, 19면.

8) 이재성/홍성찬, “기업의 빅데이터 적용방안 연구-A사, Y사 빅데이터 시스템 적용 사례-”,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5권 제1호, 2014, 108면.

### 3) 소셜 비정형데이터를 통한 마케팅 활용 가능성

자사의 노트북 컴퓨터의 장점으로서 휴대성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A사가 있다고 하자.<sup>9)</sup> 동 회사는 노트북 컴퓨터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전략의 적정성 검토를 하였고, 소셜미디어의 문서를 분석하여 시장에서 기존 전략의 적정성은 물론, 경쟁사와 장단점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경우 주요 온라인 사이트 및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몇 개 브랜드의 노트북에 대한 대량의 비정형데이터를 취합하여 항목별 긍정과 부정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마케팅 부문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 4. 소결

빅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많은 양의 SNS 글 등을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미리 찾아준다든가, 미리 범죄 장소를 예측하여 경찰은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영업과 관련한 활동에서, 기업들은 거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하여 물품의 수요나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낼 수 있고, 제공된 제품에 하자 여부에 대한 개선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기업의 재무제표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반영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빅데이터의 분석방법이 발달할수록, 우리 생활에 쌓이는 데이터의 양이 커지고 다양해질수록 그 가치는 커질 것이다.

빅데이터는 개개인의 정보를 통해 현재 수요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의 생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주어진다.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일반적인 기업에서보다 무형의 상품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금융 분야에서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률이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sup>10)</sup>된 바 있었다.

9) 이재성/홍성찬, “기업의 빅데이터 적용방안 연구-A사, Y사 빅데이터 시스템 적용 사례-”,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5권 제1호, 2014, 108면.

10) 유주선, “금융데이터 활용방안 고민할 때”, 이데일리 [목면칼럼] 2018년 7월 4일자 A25면.

하지만, 2018년 11월 국회는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0년 1월 9일 20대 국회 본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하에서는 ‘데이터 3법’의 체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개정된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Ⅲ. 데이터 3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 1.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연혁과 체계

##### 1) 연혁

######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지침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연혁적인 면을 간략하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국무총리훈령 제20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당시 공공분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고, 민간분야의 경우에는 ‘의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산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 (2) 신용정보법

데이터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법률의 형태를 띤 것은 신용정보법이다.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66호로 제정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은 2009년 4월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었다. 여기서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로 정의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3)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2001년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되었고, 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었고, 민간의 정보통신제공자까지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중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GPS서비스 등의 등장으로 인한 위치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이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sup>11)</sup>

### (4) 개인정보 보호법

2000년대 후반 들어 민간 대형 통신사나 인터넷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는 개인 정보 보호의 강화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를 맡고 있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11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sup>12)</sup>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sup>13)</sup>

## 2)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로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의미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이용, 수집할 때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

11) 김승한,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 4권 제1호, 2013, 119-120면.

12) 김수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KERI Brief, 2015, 10면.

13) 최경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179면 이하.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2014년 초에 신용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신용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다.<sup>14)</sup> 이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었다. 신용정보법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중복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2015년 3월 11일 신용정보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제3조 2를 신설한 바 있다.<sup>15)</sup>

### 3)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 (1)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식별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었고,<sup>16)</sup> 법원은 이러한 ‘식별 가능성’에 대하여, “빅데이터 내에서 당해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 모두가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정보를 구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습득 경로가 어려운지 쉬운지 등 또한 관계없이 해당 정보가 다른 정보와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하여 만들어진 정보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은 ‘식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sup>17)</sup>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 정보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14) 유주선,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도입 필요성-TM의 판매채널을 포함하여-”, 경기법조 제23호, 경기변호사협회, 2016, 3면 이하.

15)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생성되어진 정보 또한 개인정보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sup>18)</sup> 하지만 이러한 ‘식별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기준 제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자들로 하여금 거래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게 되고, 정보주체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는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결과를 창출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 기관으로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후에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는 입법 태도는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하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이외의 이용과 제공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 이외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sup>19)</sup> 개인정보의 확보가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 금지되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져 빅데이터 활용 가치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2) 개정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sup>20)</sup>

그러나 구법은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일정한 한계가 노출되어 왔고,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구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감독기구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

18) 최창희,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개선방안(하)”, 월간 손해보험, 2019년 5월호, 2019, 29면.

19)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그 이외의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20) 2018년 11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6621)의 제안 이유 참조.

으로 제기된 바 있었다.<sup>21)</sup> 더 나아가 데이터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산업의 성장과 높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sup>22)</sup> 데이터 3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 3. 데이터 3법 개정 주요 내용

#### 1) 개인정보 보호법

##### (1) 개인정보 범위의 판단기준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은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쉽게 결합하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쉽게 결합하여'라는 용어 사용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에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정보의 입수가능성'의 기준으로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 기술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명확성을 강화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변화>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정의)</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제2조(정의)</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p> <p>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p> <p>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p>

21) 2018년 11월 15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6622) 제안 이유 참조.

22) 2018년 11월 15일 신용정보법 일부 개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6636) 제안 이유 참조.

개정 전	개정 후
	<p>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p> <p>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중략</p> <p>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p>

개인정보 보호법은 '익명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의된 개념 등을 통하여,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개정전	개정후
없음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토대로 하여 동조 제1호의2에 가명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 가명처리라 함은 원래

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와 가명정보><sup>23)</sup>

	개념	활용가능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없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	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EU GDPR 반영) ①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②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복원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예를 들면, 개인정보에서 개인식별정보 부분인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여 생성되는 아이디로 대체되는 정보가 바로 가명정보가 된다. 반면, 익명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지 않는 데이터로서 개인식별정보가 없는 개별 신용정보를 의미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변화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라는 제목 하에, 제7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가명정보의 도입과 함께 개정된 동법 제3조 제7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3)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 7월부터 시행됩니다.”, 2020, 5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7항의 변화>**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 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4)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의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3절에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7). 이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제28조의2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제28조의3 제1항).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화**

원래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보호위원회로서 심의·의결기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제7조 제1항),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권 및 조사·처분 등 집행권(제7조의8 제2호, 제3호)과 의안제출 건의권 및 국회·국무회의의 발언권을 부여하였다(제7조의3 제2항, 제3항).

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였지만, 조사·처분 등의 영역에서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능, 즉 보호위원회 소관사무 중 정보처리와 관련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제7조의8 제4호),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제7조의9 제1호)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행정 감독권을 배제하도록 하였다(제7조 제1항, 제2항).

## (6) 수집목적과 합리적 범위 내 활용 가능성

개인정보처리자는 애초에 수집 시에 고지한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15조 제3항) 또는 제공(제17조 제4항)을 할 수 있다. 동 규정은 개인정보 목적 명확화 원칙을 완화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새로 생긴 추가의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목적이 애초의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면 안전성의 전제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제공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범위를 확대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감을 준다.

## (7) 기타사항

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처벌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다.

## 2) 정보통신망법

### (1)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중복 규정 삭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조항이 다수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정의,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정보주체의 권리, 손해배상, 개인정보호 인증 등의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 (2) 삭제된 규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 규정으로 이관

삭제된 정보통신망법 규정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존재하는 규정은 특례 규정이라는 명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라는 명칭으로 이관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유출통지 및 신고, 동의철회권, 손해배상, 국내대리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상호주의 등의 규정과 해당 조항에 따른 과징금 및 형사처벌 조항이 본장으로 이관되었다. 이들 특례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본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아닌 이용자,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자'의 개인정보를 그 보호범위로 하고 있다.

### (3) 정보통신망법에 존치하는 내용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여전히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다. 즉, 단말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 적용대상이 통신사업자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자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 3) 신용정보법

### (1)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신용정보법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이른바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였다(제2조 제15호, 제16호 신설).

#### <신용정보법 제2조 제15호, 제16호, 제17호>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통계조사(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2조 제6항 제9의2, 제9의4).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종략.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도 개정 신용정보법은 익명처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규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하였다(제2조 제17호(익명처리),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40조의2(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제3항 내지 제5항).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①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내실화

개정 신용정보법은 고지사항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

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고지사항 전부를 알리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주체에게 요약정보를 고지한 후에 동의를 얻는 가능성을 허용하였다(제34조의2 신설).

<신용정보법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제2항, 제33조 제1항 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생략·발췌에 관한 사항,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요청의 방법, 제4항에 따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미지정] 제34조의 2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 등급(정보활동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 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의3 신설).

<신용정보법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제3항에 따른 취소·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미지정] 제34조의3

②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보·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이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었다(제33조의2 신설).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이하 생략.

### ③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및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 기준, 기초자료 등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을 보장하였다(제36조의2 신설).<sup>24)</sup>

####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4)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Profiling)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 설명 요구·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한 것이다. 여기서 프로파일링이라 함은 통계모형, 머신러닝에 기초한 개인신용평가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온라인 보험료 산정 결과 등을 의미한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 가. 개인신용평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한정한다)
    -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신용정보업 규제요건의 완화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시킴으로써 신용정보업(CB: Credit Bureau)업을 개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 등으로 구분 및 진입규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시켰다.

<신용조회업 진입규제 요건><sup>25)</sup>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현행	신용조회업(CB업 구분X)	50억원	적용(50%이상)	
개선	개인CB	50억원	적용(50%이상)	
	① 비금융전문CB	5억원/20억원	배제	
	② 개인사업자CB	50억원	적용(50%이상)	
	기업CB	기업등급제공	20억원	적용(50%이상)
		기술신용평가	20억원	적용(50%이상)
정보조회업		5억원	배제	

개인CB의 하나로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가 신설된다.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사업자CB'가 신설되고 카드사의 진입도 가능하게 된다.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가 폐지되어,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업·부수 업무가 가능하게 되고, 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가 신설되며, 개인CB·개인사업자CB에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도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마이데이터)을 도입하였다(제2조 제8호의2,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호의2 등 신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금융회사·통신회사 등에 수집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이나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인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각 금융사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게 된다.

25)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0. 7월부터 시행됩니다.”, 2020, 5면.

## (5) 최대주주 자격심사

신용정보법 제9조의2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최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를 도입하였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의 내용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sup>26)</sup>

### <신용정보 제9조의2>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회사는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심사대상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26) 금융회사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대하여는 유주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법률상 주요 쟁점사항”, 보험학회지 제110권, 한국보험학회, 2017, 74면 이하.

보유한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제9조의2

## (6)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사·중복 조항의 정비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과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금융 분야에 알맞게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 수용하거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조문을 적용하도록 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였다. 예를 들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제2조 제5호), 신용정보의 수집 시 동의의 예외(제15조 제1항, 제2항), 신용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제17조 제1항, 제6항),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제17조 제5항)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제의 정합성을 맞추도록 하였다.

## 4.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1) 의의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6930호, '20. 2. 4 공포)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각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31일 동시에 입법예고(40일간)를 실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령 관련 주요 내용을 다룬다.

##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1)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위임한 사항

첫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제14조의2)에 대한 사항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추어 예측 가능성, 추가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에서 수집 목적과 양립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처리를 허용하는 요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경직성을 완화한 것이다.

둘째, 가명정보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제29조의2, 제29조의3)을 들 수 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 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내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다만, 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 및 승인을 거쳐서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일정한 인력·조직, 시설·장비, 재정능력을 갖추어 지정될 수 있으며, 3년간 지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은 전문성과 신뢰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29조의5)를 들 수 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며 접근 권한도 분리해야 하는 등의 물리적·기술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명정보 처리 목적, 보유기간, 파기 등의 사항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게 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2)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정보 포함

개념을 알아볼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 고유의 정보로서 유출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서 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인종·목적정보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목적정보를 민감정보에 새롭게 추가하여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였다(제18조).

### (3) 위원회 운영제도

전문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다(제5조). 또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화된 개인정보 보호정책 추진과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시·도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5조의2, 제5조의3).

3년마다 수립하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최대 2년의 시차가 발생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 시점에 더 근접하여 수립하도록 하였다(제11조, 제12조).

### (4)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이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 통합 반영하였다(제30조 제2항,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12까지).

## 3)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첫째,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정 중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며, 이관된 업무는 보호위에서 수행하게 된다.

셋째, 정보통신망법에 존치되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조문 체계 정비도 반영되었다.

#### 4) 신용정보법 시행령

##### (1)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

데이터 결합 절차 및 전문기관 지정(제22조의4, 제14조의2)에 대한 내용이다.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결합한 뒤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거쳐 결합의뢰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전문기관은 데이터 전문기관 업무 수행직원과 그 외의 인력을, 데이터 결합서버와 그 외의 서버를 분리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 (2) 개정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제18조의6, 제28조의3)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마이데이터 산업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6)에 관한 사항이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였으며,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주선 업무, 로보 어드바이저( robo-advisor)를 이용한 투자자문·일임업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등 정보주체의 정당한 정보주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받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 (4) 신용정보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신용정보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제6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8조의3 내지 제18조의5)를 들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허가단위별 자본금 요건(5억원 내지 50억원)에 따라 정해진 전문인력요건(2명 내지 10명)을 갖추도록 하며,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업무를 다른 법령 등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사·계열사에 대한 신용평점 우대 등 불공정한 신용평가 행위,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 상향을 약속하는 행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용정보업의 영업행위를 건전성을 제고하였다.

#### **(5) 신용정보의 범위**

종전에 이 영에서 규정하던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2조).

#### **(6)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법률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을 규정하였다(제9조 및 별표 1의2).

대주주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등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공단 및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등을 규정하였다.

## **(7) 최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규정하였다.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로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규정하였다.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 자격심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대상 회사가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을 보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다.

## **(8)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외 대상**

제11조의3을 신설하여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자가 예외적으로 신용정보·신용조사·마이데이터(MyData)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였다.

## **(9) 정보집합물 결합 시 준수사항**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의뢰하는 신용정보회사 등은 둘 이상의 정보 연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결합키로 대체하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를 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다.

## **(10)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18조의6을 신설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송요구 철회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

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금지행위를 규정하였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의 직접 보관, 접근권한 확보 및 지배권의 사실상 확보 등을 통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11)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의 보호위원회 이관**

제35조의3 및 제36조의4를 신설하여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대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12)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

금융권 정보활용·제공 동의서 개편(제29조의2, 제29조의3)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활용·제공동의에 따른 위험 및 혜택,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에게 요약된 정보활용·제공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산정한 정보활용 동의등급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수집·제공대상 정보, 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알고하는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13)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령(안) 제16조의2는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업자들은 연 1회 이상 신용정보법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율규제기구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이 필요시 현황점검, 테마 검사 등을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시행령은 제16조의2를 삭제되어 있는 모습이다. 반면, 신용정보법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가 새로 신설되고, (안)에 두고자 했던 내용은 시행령 제36조의5로 자리를 옮겨 2021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 <신용정보법 제45조의5>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증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등급의 표시, 제2항에 따른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1. 2. 4.] 제45조의5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6조의5>

제36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 ①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제17조제7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45조의5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 IV. 개정 데이터 3법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1. 상품 개발의 확대 가능성

#### 1) 의의

정보결합은 동일한 개인에 대한 두 개 이상의 정보가 결합되는 것으로서, 보험금 지급 데이터와 건강 관련 데이터가 결합하는 형태로, 법 개정 이전에는 데이터 결합을 위하여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하였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결합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정보 결합이 용이해져 결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다.

## 2) 생명보험영역

보험회사들은 결합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체계를 세분화하거나 현재의 상태에서부터 개선할 수 여지를 갖게 되었다.<sup>27)</sup> 피보험자가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병력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피보험자가 기왕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잘할 경우에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회사들은 유병자보험을 개발,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병자보험과 같이 기존에 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하는 보험회사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28)</sup>

## 3) 손해보험영역

운전습관이나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실시간 데이터, 소셜 미디어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가격차별화를 하거나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를 추구한다. 상품 개발 분야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손해보험의 영역에서는 특히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운전자의 운전 형태 정보를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 'UBI(Usage-based Insurance)' 상품개발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sup>29)</sup>

기존의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한 Pay-As-You-Drive 상품에서 급제동, 과속, 급진로

27) Aegon은 세계 최초 소셜미디어 기반 보험을 출시했다는 점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었다. 고객 참여도가 높은 소셜미디어를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College Kroodle(학생 대상 보험) Travel Kroodle(여행자 보험, pay as-you-go option 장착) 등 고객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28) 해외 보험회사들은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던 종류의 데이터(비정형데이터, 이부데이터 등)를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보다 향상시키고,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실행하여 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고객-마케팅 데이터(consumer-marketing data), 생명보험 관련 이력, 처방전 데이터 등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여 언더라이팅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업무 효율을 제고한다.

29) Aviva, Generali, Progressive, Travelers 등은 자동차 주행정보, 위치정보, 상태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자동차 UBI 상품을 개발하여 상품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일종인 텔레매틱스(telematics: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차량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의 발달로 운전자의 운전행태에 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된다.

변경 등 운전습관을 추가로 활용하는 Pay-How-You-Drive 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주된 비즈니스 모형은 보험료 할인 모형으로 기존에 고위험군(저연령, 신규)으로 분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전행태를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의 가격차별화 전략에서, 텔레마틱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예를 들면, 운전습관 피드백 서비스, 원격 자동차 진단 및 감시 서비스, 자동 사고신고 서비스, 도난 추적 서비스 등) 제공을 통해 상품을 보다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인수심사의 개선

보험업에서 인수(Underwriting)란 피보험자나 보험 목적물의 잠재적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인수 과정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고려하여 등급을 나누어 리스크를 평가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정약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피보험자나 보험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나 보험금의 한도 조정 등을 결정한다.

처방전 데이터와 사망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의 인수심사를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가명·익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보험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어 요율 세분화 및 인수심사 고도화가 가능해 질 것이다.<sup>30)</sup>

보험회사는 인수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을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진단이나 적부적출 모델이나 개별사망위험 예측, 실효예측 모델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고객, 모집인, 계약 속성 등을 분석하여 신규 계약의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 수준이 낮은 경우 자동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할 수 있고, 계약정보나 신용등급 또는 평균 입원일수 정보 데이터 등을 이용, 계약자 자동심사를 통한 검진 절차를 생략하여 계약심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신용평가정보, 라이프스타일 등의 데이터는 보험 인수 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취미나 방문웹사이트, TV 시청시간 등의 정보 등을

30) 최창희,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사례 및 개선방안(상)”, 손해보험, 2019년 4월호, 2019, 32면.

3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현황”, 2019년 5월 22일자 참조.

통하여 보험회사는 인수 시 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sup>32)</sup>

### 3. 마케팅과 영업 분야

음성데이터는 영업 분야 가운데 마케팅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고객과 상담원의 대화를 통하여 보험회사는 당사 보험상품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음성데이터를 통하여 채널 전략을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sup>33)</sup> 실제로 다수의 보험회사는 콜센터를 통한 고객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있고, 외국계 보험회사나 TM 판매채널을 주로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이미 데이터화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은 무엇보다도 계약자 맞춤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과 관련된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하여 언더라이팅 및 보험료 산정하고 가입자에 적절한 보험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는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또한 제공할 수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객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웨어러블기기(wearable device) 제공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유망 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회사의 주요 판매채널로서 보험설계사는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영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설계사 조기정착 모델로 활용할 수 있고, 신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이탈을 예측한다든가, 고아고객에 대한 최적의 보험설계사를 배분하는 작업에도 빅데이터는 그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

32) 유럽계 생명보험회사 SCOR Global Life는 대규모 외부데이터를 내부데이터와 통합한 'Velogica'라는 자동 실시간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가시장(middle market)에서의 경쟁력을 높여 오고 있다. 고객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로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진다. 전체 계약심사 중 90%가 1분 안에 끝나고, 시스템이 아닌 심사자가 직접 심사를 하는 경우는 5% 이하로, 상품 판매에 걸리는 시간이 총 15분 이하로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심사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명보험 관련 이력(Medical Informaation Bureau Report), 운전기록(Motor Vehicle Report), 처방전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언더라이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보험료가 비교적 낮은 중가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다.

33) 네델란드 선도보험회사 Aegon은 Facebook을 기반으로 하는 보험 플랫폼인 'Kroodle'을 출시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상품 개발 및 언더라이팅 등에 활용하고 있다. Kroodle은 100% 모바일 기기 플랫폼을 사용하는 디지털 보험회사로 서류작업이 일체 필요없는 보험 플랫폼이다. Facebook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모바일 및 인터넷으로 보험 구매가 가능하다.

## 4. 고객 관리의 합리화

마이데이터 사업은 특정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수집하여 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이다.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시 보험회사의 고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져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에도 보험회사 및 대리점들이 보험 비교나 가입 내역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단순히 보험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진단·처방전·치료내역과 같은 ‘건강정보’에 ‘자산 현황이나 생활 습관’ 등을 결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로서 건강관리나 연금관리 등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험회사는 마이데이터 은행에서 개인들의 정보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34)

빅데이터는 보유계약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할 것이다. 보험계약에 대한 고객 이탈 예측이나 계약자의 행동 분석을 통한 신계약 유지 예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계약별 실효율과 실효 원인 분석에 대한 예측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 5. 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사기 예방

보험금 지급이나 지급 심사 시 유용한 데이터로는 텍스트데이터를 들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텍스트로는 의료 영수증, 처방전 또는 지급심사 관련 문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는 특히 보험사기 적발에 유용한 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35)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에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병원 방문은 피보험자와 병원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설계사 등도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 이들 사

---

34) 미국 생명보험회사 MetLife의 경우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여 통합 고객관리 시스템인 'The Wall'을 구축하여 상품판매 및 마케팅과 고객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콜센터의 고객관리 담당자는 고객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고객관리 지침에 따라 교차판매, 상향판매 등의 기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한다. 일본은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은행이 집적하여 여러 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에 동의한 정보주체는 현금이나 포인트 등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받는다고 한다.

35) 임준/황인창/이성은,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 KiRi Weekly, 2015. 7.13, 5면.

이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특이점이나 패턴 기법 등을 통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소셜미디어 상의 공개된 데이터와 고객 참여를 바탕으로 얻은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기능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모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IFDS(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는 보험계약, 보험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기 고위험군을 자동 추출해서 현장 조사 전문인력에게 알려주고 조사에 착수, 이 시스템으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있다. 고위험군 사고 분석에 특화된 이 시스템은 축적된 계약과 사고 관련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접수된 사고의 패턴과 위험도 등을 추출하여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게 된다.

## V. 결론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정의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무화로 인해 타 기관의 빅데이터를 구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하였던 구)데이터 3법이 지닌 법률상의 애로사항은 데이터 관련 3법의 개정으로 한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험산업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대상에 대한 배제 여부이다. 예를 들면, 고혈압 유병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를 산출하여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고혈압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유병자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고, 중대질병의 발생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익명의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로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은 데이터 경제의 흐름에서 데이터 기반의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을 앞당겨 줄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산업, 비금융정보 전문 CB업, 개인사업자 CB업 등 새로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도입으로 금융접근성의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보험업계에 사업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을 것 같다. 마이데이터 사업 모델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와의 접목이 가장 용이하고, 은행이나 카드와 같은 생활밀접형 금융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편이다. 푸시 마케팅 중심의 판매형태를

36) 최창희,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사례 및 개선방안(상)”, 손해보험, 2019년 4월호, 2019, 35면.

가지고 있고, 플랫폼 영업 니즈에 취약한 보험업권의 경우 마이데이터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입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세금·사회보험료 성실납부 이력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요청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과세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개인정보의 민감성 정도가 크다는 점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가 실명정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당초 법(안)은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 손해 정도를 강화하여 5배로 확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배율의 범위를 강화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강현구/유주선/이성남, 핀테크와 법 제2판, 씨아이알출판사, 2018.

김수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규제 개선 검토”, KERI Brief 15-28, 한국경제연구원, 2015.

김선남,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정정책 개선방안 연구”, 단국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15.

김승한, “빅 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향”,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4권 제1호, 2013.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2016.

유주선, “금융데이터 활용방안 고민할 때”, 이데일리 [목면칼럼] 2018년 7월 4일자 A25면.

유주선,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법률상 주요 쟁점사항”, 보험학회지 제110권, 한국보험학회, 2017.

유주선,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도입 필요성-TM의 판매채널을 포함하여-”, 경기법조 제23호, 경기변호사협회, 2016.

이서구,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마케팅적 접근”, 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1호(통권 제123호), 대한경영학회, 2015.

이인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급한 개선과제”, 법연 spring 제58호, 2018.

이재성/홍성찬, “기업의 빅데이터 적용방안 연구-A사, Y사 빅데이터 시스템 적용 사례-”,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제15권 제1호, 2014.

임준/황인창/이성은,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및 향후 과제”, Kiri Weekly, 한국 보험연구원, 2015.

최경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7.

최창희,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개선방안(상), 손해보험, 2019년 4월호, 2019.

최창희,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개선방안(하), 손해보험, 2019년 5월호, 2019.

최창희/홍민지,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0년 7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년 7월 28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0년 3월 31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데이터 3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사항”, 2020년 3월 31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용정보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 11월 28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험회사 인슈어테크(InsurTech) 활용현황”, 2019년 5월 22일.



# 세션별 발표논문 초록





## 세션 I 보험





발표자	성명	김경선		
	소속	서울대학교	희망 세션	리스크관리
논문제목	한글	2-요인 효용함수 하에서의 손실경감과 저축		
	영문	Loss Reduction and Saving under a Two-argument Utility Framework		
공동연구	홍지민 (송실대)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소득과 자산에 의존하는 2-요인 효용함수 하에서 개인의 최적 손실경감 및 저축을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기간 모델과 2기간 모델을 각각 고려하고,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따른 최적 손실경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1기간 모델에서 (i) 소득과 자산 간의 상관회피(correlation aversion)가 양이거나, 상관회피가 음이고 소득에 대한 절대상관회피(absolute correlation aversion)가 자산에 대한 절대위험회피(ARA)보다 작으면 자산이 커질수록 손실경감이 감소한다. (ii) 상관회피가 양이거나, 상관회피가 음이고 자산에 대한 절대상관회피가 소득에 대한 절대위험회피보다 작으면 소득이 커질수록 손실경감이 증가한다. 둘째, 2기간 모델에서 손실경감만을 고려하는 경우, (i) 자산에 변화에 따른 손실경감의 변화는 1기간과 유사하다.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손실경감의 변화는 (ii) 1기의 소득이 커질수록 손실경감 노력은 증가하고, (iii) 상관회피가 음(양)이면 2기의 소득이 커질수록 손실경감 노력은 감소(증가)한다. 한편, 2기간 모델에서 손실경감과 저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상관회피가 양이면 손실경감과 저축이 보완관계일 수 있다. 이는 손실경감과 저축이 대체관계라는 기존모델의 결과와 대비되는 것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양승모		
	소속	보험개발원	희망 세션	기타 (손해보험)
논문제목	한글	심도분포적합을 이용한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산출 및 실무에서의 시사점		
	영문			
공동연구	대표연구자: 양승모, 보험개발원			
논문초록 (Abstract)	<p>현재 일반손해보험은 법률상의 보상한도 금액의 확장 등을 배경으로 하여, 현행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를 확장하여야 하는 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험사의 손해액을 나타내는 지급보험금 및 지급준비금 통계의 부족 및 한계로 인해 보상한도액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심도분포의 적합 및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확장이 필요하다.</p> <p>이번 연구는 제한적인 손해액 통계의 한계를 손해보험 심도분포와 모수추정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적정성 개선 정도를 분석하여, 실무적으로 보상한도 인상계수 산출 및 분포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석영		
	소속	보험연구원	희망 세션	보험
논문제목	한글	생명보험의 해지와 승환: 모집인의 영향에 대한 실증		
	영문	Lapse and Replacement : An Evidence of Intermediary's Influence in Life Insurance		
공동연구	백철(신용정보원) 김헌수(순천향대학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생명보험계약 승환과정에서의 모집인 관여에 관한 가설 - 모집인 이익 가설 - 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3.6백만건의 생명보험 승환 데이터를 바탕으로한 연구를 통해, 보험모집인의 수당이 급격히 감소하는 계약이후 12개월 시점부터 해지건수가 또한 매우 크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회귀불연속모형에 적용하여 분석할 결과, 계약 후 12개월 전후의 해지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승환 전과 후의 계약이 각기 다른 회사 소속의 모집인인 경우에는 12개월 전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반해, 승환 전과 후 동일한 회사 소속의 모집인인 경우는 12개월 전후의 해지건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두 경우의 차이는 해당 계약자에 대한 기존 보유정보를 신계약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모집인 이익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볼 때, 금융감독당국과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해지와 승환 과정에서의 모집인의 수당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p>			
Memo				

발표자	성명	백 철		
	소속	한국신용정보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보험산업에서의 신용정보 활용사례와 과제		
	영문	The use of credit-based insurance score and future challenges		
공동연구	최광석(한국신용정보원) - 주저자 백철(한국신용정보원) - 교신저자 <발표>			
논문초록 (Abstract)	<p>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보험산업에서도 최근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언더라이팅 및 보험요율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p> <p>이 중 개인의 신용도와 관련된 신용정보는 보험 사고율과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신용정보 활용함에 따라 위험측정의 정확도 향상, 보험가입자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음이 연구결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에서는 보험산업에서의 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바른 활용을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보험산업에서의 신용정보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데이터3법 개정 등 본격적인 데이터 활용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보험산업이 고려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윤기열		
	소속	보험개발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개정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의미와 보험업		
	영문	The Concept of the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 the Credit Information Act of 2020 and the Insurance of Korea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 법률이 법률 제16957호로 공포되어, 8월 5일 시행된다. 개정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지만 기대도 많이 받은 법률이어서, 개정 신용정보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신용정보법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7월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신용고지업취체규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법률이다. 대한민국 건국 후 흥신업단속법, 신용조사업법을 거쳐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다. 그런데 신용정보법이 상정해 온 “(개인)신용정보”의 이념형(理想型, Idealtypus)은 보험업에서 다루는 “보험정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어,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해석상 어려움이 많았다.</p> <p>이번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가 보완되었다고 볼 부분도 있고,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개정 신용정보법이 보험정보를 포괄하도록 규정한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및 관련 개념체계가 입법자가 의도한 것처럼 충실히 “보험정보”의 유개념(類概念)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반성적(反省的), 교의적으로(dogmatisch) 검토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이순재		
	소속	세종대학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저술지원과제 )
논문제목	한글	한국의 보험발전 과정과 경제 성장		
	영문	Insurance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Korea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의 보험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제1부에서는 시간적으로는 1890년대부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130년을 범주로 하고 있다. 즉, 보험의 역사를 조선시대 말 열강이 한반도에서 각축하는 대한제국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4차 산업혁명기에 지속가능 성장의 활로를 찾기 위해 보험산업이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를 포함한다.</p> <p>보험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제2부에서는 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보험의 역할이 존재했는지 이에 관한 연구들을 리뷰하는 파트로서 보험의 경제적 중요성과 보험수요의 결정 연구에서부터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다룬 이론 연구와 실증연구를 대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p> <p>제3부에 포함되는 보험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파트에서는 보험산업이 향후에도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며,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 파트에는 경제성장이나 보험산업의 범주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기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요 과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리뷰 분석할 계획이다.</p>			
Memo	2019년 저술지원사업 과제 중간보고			

## 세션 II 보험계리





발표자	성명	이가은		
	소속	성균관대	희망 세션	계리
논문제목	한글	자산리스크와 보험리스크가 내재된 보험사 예금보험료율의 결정		
	영문			
공동연구	이항석 (성균관대), 송성주 (고려대)			
논문초록 (Abstract)	<p>보험사의 예금보험료율의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금융권역별로 산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차등보험료율의 합리적 반영 및 소비자와 금융회사의 moral hazard 문제 등으로 향후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해외제도가 post assessment 방식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예금보험료율의 결정관련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도 드문 실정이다.</p> <p>옵션이 내재된 예금보험료율의 결정에 대한 연구의 시초는 자산리스크만을 반영하여 Merton(1977)이 하였고 이를 토대로 Cummins (1988)는 자산리스크에 부채의 변동성을 추가하여 보험사의 예금보험료율 (insurance guaranty fund rate)의 공식을 산출하였다. 하지만 보증사건의 발생시점을 계약기간 전체가 아닌 계약 년도말로 설정하여 default 발생확률을 논리적으로 과소 계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Hwang et al (2015)는 자산리스크가 내재된 barrier option을 반영한 보험사의 예금보험료율을 구하는 명시적 공식을 각각 유도하였다. 하지만 Cummins (1988)의 장점인 보험리스크의 반영을 효율공식에 고려하지는 못하였다.</p> <p>본 연구에서는 Cummins(1988)의 보험리스크와 Hwang et al(2015)의 barrier 확률 반영의 장점을 모두 고려하여 명시적 보험료율의 공식을 유도한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자산리스크별, 부채 변동성 별, 시장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험료율을 논의한다.</p>			
Memo	.			

발표자	성명	장 철		
	소속	보험연구원 생명연금연구실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거치식 연금을 활용한 퇴직계좌의 최적투자		
	영문	Optimal investment for a retirement plan with deferred annuities allowing for inflation and labour income risk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은퇴계좌를 가진 개인 투자자의 최적 투자포트폴리오 모형을 설계하고 그 해답에서 거치식 연금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경영과학(OR)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확률적 계획법(Stochastic Programming)을 적용해 문제를 풀었다. 개인은 주식, 채권(물가연동채권 포함), 현금(예금)에 투자할 수 있으며, 거치식 연금(물가지수연동 포함)도 구매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근로소득은 확률론적 모형에 따라 발생한다. 투자자의 효용은 실질 은퇴소득과 유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자산수익률은 넬슨-시겔(Nelson-Siegel)이 내재된 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p> <p>모형결과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근로기간 초기부터 거치식 연금을 구매하여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산의 구성은 비위험 자산으로 이동한다. 거치식 연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 경제학적 후생지수는 40%나 감소하였다. 물가지수연동 연금과 확정급여 연금의 구성은 개인의 위험·시간·유산에 대한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적 투자포트폴리오는 시장모형에 사용된 장기전망에 따라 변동하나 거치식 연금을 퇴직계좌 운용 초기부터 구매해야 한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p>			
Memo				

발표자	성명	이항석		
	소속	성균관대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계리 )
논문제목	한글	자산운용 및 영업의 노력과 보험상품 이자율 정책		
	영문	Insurer's crediting rate and efforts of asset management and marketing		
공동연구	이민하(성균관대), 하홍준(St. Joseph Univ.)			
논문초록 (Abstract)	<p>보험사의 공시이율 정책에 관한 연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에서도 드물다. 특히 이론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에 대한 연구도 찾기 어렵다. Lee et al (2020)에서 Holstrom(1979)의 principal-agent model에서 additional information 변수를 binary variable이 아닌 연속형 변수로 확장하여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계약자를 principal로 설정하고 공시이율 결정에 agent(insurer)의 노력에 대한 관측변수로 초과수익률(= 자산이익률 -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공시이율 결정함수를 유도하였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p> <p>Lee et al (2020)과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의 노력이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확장하여 마케팅 노력을 추가하여 principal-agent model을 일반화한다. Lee et al (2020)과 차별성은 single effort에서 multiple efforts로 확장되며 보험사의 효용의 wealth가 공시이율만 반영한 기존 연구와 달리 wealth를 공시이율과 상대적 계약량의 곱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성과 이론모형의 완결성을 높였다. 또한 공시이율의 결정과정에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론 모형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초과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도 마케팅의 노력이 필요한 수준 (목표대비 영업실적 달성 정도)에 따라서 공시이율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이론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유도된 이론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근 생명보험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논의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조재훈		
	소속	영남대학교	희망 세션	리스크관리
논문제목	한글	조건부다층혼합분포를 이용한 비비례 재보험료 계산		
	영문	Nonproportional reinsurance premium calculation by conditional layer mixture distribution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비비례 재보험계약에서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액이 심도는 깊고 빈도는 낮은 특성을 지닌 경우,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일반적인 손해분포 적합 방법으로는 재보험료의 계산이 매우 어려워진다. 단순한 손해분포 모형으로는 손해액 전 영역에서의 적절한 분포적합을 얻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이유이며, 특히 심도가 높은 손해액 영역의 꼬리 두터움이 증가할수록 그 난해함은 가중된다. 꼬리분포에 극단값 이론을 이용한 혼합분포 방법론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주 응용되었으나 임계점 추정과 모형의 선택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다. 이번 연구는 혼합분포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조건부다층혼합분포의 추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추정결과가 거대손해 등의 극단값이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위험에 체결된 초과손해액재보험과 ECOMOR 재보험의 특약재보험료 계산에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 결과의 응용으로서, 환경오염배상책임 손해액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구성분포와 조건부다층혼합분포를 추정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재보험계약에 의한 위험분산 효과의 측정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p>			
Memo	2019년도 한국보험학회 선도연구과제			

발표자	성명	안재윤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희망 세션	보험 or 계리
논문제목	한글	손실액의 예측: 사고 빈도 VS 총사고액		
	영문	Collective Risk Model: Choices between Historical Frequency and Aggregate Severity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손실모형 (Collective Risk Model)에서 손해액(Loss)은 개별 심도들의 Random Sum으로 정의되어 있다. 손실모형에서 과거자료를 사용하여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것을 사후분류 (Posteriori risk classification)이라 부른다. 사후분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사후분류란 손해액의 예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물론 사고의 빈도와 그에 따른 개별 심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후분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보험의 형태에 따라서 사고의 빈도만 사용하여 사후 위험을 분류하거나 사고의 심도만 사용하여 사후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발표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사후 위험 분류 방법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p> <p>Typical risk classification procedure in insurance is consists of a priori risk classification determined by observable risk characteristics, and a posteriori risk classification where the premium is adjusted to reflect the policyholder's claim history. While using the full claim history data is optimal in a posteriori risk classification procedure, some insurance sectors, however, only use partial information of the claim history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 premium to charge. Classical examples include that auto insurances premium are determined by the claim frequency data and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s are based on the aggregate severity. The motivation for such practice is to have a simplified and efficient posteriori risk classification procedure which is customized to the involved insurance policy. This paper compar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the two simplified posteriori risk classifications, i.e. based on frequency versus severity, and provides the mathematical framework to assist practitioners in choosing the most appropriate practice.</p>			
Memo				

발표자	성명	최장훈		
	소속	보험연구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코로나-19 충격을 가정한 사망률에 대한 예측 모형 비교: LC 모형 vs. 4-모수 요인 모형		
	영문	Comparison of forecasting mortality: LC model vs. 4-PFM model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사망률의 변화는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며, 연령대별로 사망률 추이에 변화가 발생한다면 인구 구조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발생 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망률 모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p> <p>최근 코로나-19의 발생은 고 연령대의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의 연령대별 사망률 구조가 현재와 다른 구조적인 변화를 맞을 수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Lee-Carter 모형은 비모수적 예측 모형으로 연령별 사망률이 과거와 달라질 경우 모수적 예측 모형보다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p> <p>본 논문은 최근에 개발된 4-모수 요인 모형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에 충격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Lee-Carter 모형과의 적합성을 비교한다.</p>			
Memo				

## 세션 III 보험법





발표자	성명	지광운		
	소속	충북대학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보험업의 시스템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한 법적 과제 -EU GDPR 및 독일 보험업정보보호규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영문	Leg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customer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ue to the digitization of the insurance industry -Focus on comparison with EU GDPR and German directive-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보험사업의 시스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화는 넓은 의미에서 보험회사측의 업무의 효율화를 촉진시킨다. 보험업의 시스템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은 보험회사에 상당한 메리트를 가져다 준다. 그러나 고객정보가 보험회사측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막는가 하는 보험회사의 고객정보관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나아가 신상품 개발에서 보험회사, 그룹회사 및 제휴회사는 어느 범위의 고객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모집인은 어느 범위의 고객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특히,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같이 상충되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양자를 어떠한 방향성 조율해 가야 하는가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이러한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EU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내용은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p> <p>2018년 5월에 시행된 GDPR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 법규제로서 알려져 있다.</p>			

	<p>시행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GDPR이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나 GDPR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보보호감독 당국의 존재는 각 회원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주체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향상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p> <p>보험회사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리자로서 GDPR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만, 삭제권 행사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효과적으로 법 규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p> <p>본 논문은 유럽위원회가 GDPR 시행 1년 후에 실시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법 규제의 동향과 보험회사가 겪은 문제점과 향후 대처해야 할 과제를 소개하고, 이렇게 제기된 문제점을 독일의 보험협회가 제정한 정보보호규정을 통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GDPR은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GDPR을 둘러싼 과제나 동향은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에게도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p> <p>따라서 이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개정데이터3법의 시행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법적 과제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성, 자율규제의 제정 필요성, 국제적 정합성의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p>
Memo	

발표자	성명	조규성
	소속	협성대 금융세무학과
논문제목	한글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관련 쟁점에 관한 고찰
	영문	A Study on the Issues of Car Insurance Deductible in Self-Car Damages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최근 법원은 쌍방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보험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선처리 보상을 받으면서 지출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미보전 손해'로 파악함으로써 보험사간의 구상실무에 혼선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의 법적 성질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다.</p> <p>우선 자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즉 본인과실에 의한 자차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물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까지 전보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자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자기부담금이다.</p> <p>이러한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발생시 자기가 부담할 몫이 되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발생한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몫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제도(Deductible)'라고 할 수 있다.</p> <p>자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약정하는 취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비용 절감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자차보험을 처리하면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한 손해'로 파악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손해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상의 책임(채무)'이자 보험회사에게는 '책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향후 판례의 변경을 기대해 본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선희		
	소속	법무법인 율촌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데이터 3법에 따른 보험산업 전망		
	영문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4차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되었다.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축적된 빅데이터는 보험업 전반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보다 정교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리스크 평가 시스템 개발, FDS 개발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사업과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새로이 도입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정보주체들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금융회사 등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많은 금융회사들과 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여부가 결국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과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업의 혁신성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p>			
Memo				

## 세션Ⅳ 보험재무





발표자	성명	박복희		
	소속	전주대학교	희망 세션	리스크관리
논문제목	한글	가계 재정구조가 보험 소비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Influence of Household Financial Structure on Insurance Consumption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보험은 리스크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 길어지면서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리스크 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자산 배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료 지출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현재 소비를 위축시키고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나치게 낮을 경우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p> <p>본 연구에서는 고정비처럼 지출되고 있는 보험 소비에 대하여 보험료 지출 비중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가계는 이를 통해 적정 보험료 지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업계는 가계재무관리에서 보장성보험준비지표에 근거한 적정보험료 지출을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p> <p>본 연구의 목적은 위험관리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 지출을 통해서 가계가 바람직한 재무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험 소비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보험과소비의 개념을 정의하여 보험 과소비 여부와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p>			
Memo				

발표자	성명	오태형		
	소속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희망 세션	보험
논문제목	한글	보험사의 지속적 이익과 현금배당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영문	Permanent Earning and Dividend Policy of Insurance company		
공동연구	이병근(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현금배당이 지속적 이익에 의존한다는 주장이 금융기업 특히 보험사에게도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의 순이익을 지속적 이익과 일시적 이익으로 분해하여 현금배당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있다.</p> <p>먼저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상장된 보험사를 대상으로 최소 15년의 분석기간을 통해 베버리지-넬슨 분해를 실시,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순이익을 기업별-연도별 지속적 이익과 일시적 이익으로 분해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분해된 지속적 이익과 일시적 이익, 그리고 선행연구들에 포함된 여러 통제변수들과 현금배당금과의 관계를 적정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 추정한다. 지속적 이익과 일시적 이익이 현금배당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시적 이익은 현금배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지속적 이익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금배당의 결정에 지속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Memo				

발표자	성명	한상용		
	소속	보험연구원	희망 세션	보험, 또는 기업재무
논문제목	한글	시장 요인이 경영자 보수에 미치는 영향: 미국 손해보험회사 사례 중심		
	영문	Are CEOs Rewarded for Luck? - Evidence from US Property-Liability Insurance Firms		
공동연구	심증보(Univ. of Colorado Denver) 김규동(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미국 손해보험시장에서 CEO의 보수가 시장요인(산업의 언더라이팅 마진)에 영향을 받는지(pay for luck) 아니면 순수히 CEO의 능력에 기반하는지(pay for skill), 그리고 보험회사의 지배구조가 시장 요인과 CEO의 능력에 따른 보수에 민감한지에 관한 것이다.</p> <p>분석을 위하여 2단계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시장요인(산업의 언더라이팅 마진)과 회사의 고유 요인에 따른 회사 성과(회사의 언더라이팅 마진)를 산출하고, 2단계에서는 CEO 보수가 시장 요인과 회사 요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에서 회사 지배구조(CEO의 compensation committee 멤버 여부)가 CEO 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p> <p>손해보험회사는 시장 요인과 회사 요인 모두 CEO 보수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지배구조가 약한 회사(CEO가 compensation committee 멤버인 경우)는 시장 요인에 의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p>			
Memo				



## 세션Ⅴ 보험 정책





발표자	성명	임 준		
	소속	보험연구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정책 과제		
	영문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발표자료는 크게 2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코로나 19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보험종목별로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향후 전망을 예상해본다.</p> <p>위험요인은 크게 재무건전성 측면과 보험영업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고, 기회요인은 위험인식 제고, 디지털화의 가속화, 사업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p> <p>발표자의 두 번째 파트는 코로나 19 이후 보험산업 정책으로 크게 (1)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2) 금융안전성 제고, (3)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제도 개선, (4) 인슈어테크 활성화와 보험소비자 보호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p> <p>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업휴지보험 역할 제고, 실손의료보험제도 정상화, 사이버보험 시장 활성화 이슈 등에 대해 다루었다. 금융안전성 제고에서는 건전성 규제 이슈에 대해, 그리고 원활한 사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계약이전제도 이슈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슈어테크 활성화 관련해서는 언택트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이슈 등에 대해 다루었다.</p>			
Memo				

발표자	성명	노건엽		
	소속	보험연구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해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방안		
	영문	Overseas Insurers' Response to Low interest rate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2000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제로금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p> <p>국내 보험회사,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운용자산이 익률보다 높은 이차 역마진이 지속되고 수익구조가 저금리환경에 취약한 형태이다.</p> <p>해외 보험회사의 저금리 대응방안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 한다.</p> <p>국내와 보험환경이 유사한 일본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p> <p>일본은 1990년대초 버블붕괴 이후 불황 지속으로 저금리가 지속되었다.</p> <p>1990년 후반 7개의 생보사와 1개의 손보사가 파산한 후 위기극복을 위해 상품 및 자산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p> <p>대만은 2000년대초 IT버블이후 급격한 금리하락으로 이차역마진이 지속되고 있다.</p> <p>외화표시 상품 도입 등의 상품전략 변화와 해외투자 증가 등 자산운용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화 변동성 준비금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있다.</p>			
Memo				

발표자	성명	이승준		
	소속	보험연구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보험연구원 세션 )
논문제목	한글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영문	A Study on Deposit Insurance and Resolution Scheme		
공동연구	황인창(보험연구원), 김해식(보험연구원), 오승연(보험연구원), 김동겸(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금융권역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합예금보험제도는 금융안정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금자보호제도의 확장된 형태로 보험계약자와 금융투자자에 대한 보호에 문제점을 노정하여 왔으며 20년간 변화된 금융환경도 반영하고 있지 못함. 본고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의 개선방안을 금융회사 정리제도와 기금관리체계, 보호한도 및 보호범위, 기금의 자금조달방식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p>			
Memo				



## 세션Ⅵ 리스크 관리





발표자	성명	윤지연		
	소속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영문	The Effects of Executive Compensation on Corporate Hedging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We provide the first evidence on the effects of executive compensation on corporate hedging for financial institutions. Our unique dataset that allows construction of a new, cleaner measure of corporate hedging behavior. Specifically, we include hedging-driven usage of both derivatives and insurance. To address potential endogeneity, we utilize a difference-in-differences approach,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FAS 123R, that required firms to expense stock-based compensation at fair value. We find that the decline in convexity of executive compensation following FAS 123R led firms to increase their hedging, primarily through increased insurance demand.</p>			
Memo				

발표자	성명	정광민		
	소속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희망 세션	리스크관리
논문제목	한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극단적 손실 추정 모형		
	영문	Extreme Data Breach Losse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stimating probable maximum loss for data breach risk		
공동연구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미국 개인정보 유출 사건 데이터베이스의 손실자료를 이용하여, 최대 가능 손실 크기를 대안적 통계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에 주로 사용된 Peaks-over-Threshold 모형을 통한 손실의 크기가 지난 5년간 발생한 극단적 손실들에 비해 과소 추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극단적 사이버 손실의 정확한 추정방법을 제안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 모형들의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시계열 특성을 고려한 블록 최대화 (Block Maxima) 모형을 활용하여 극단적 손실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Value-at-Risk 기반의 최대 가능 손실 추정량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통계 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의 블록 최대 손실 시계열은 정상성 (stationarity)을 가지며, 일반화 극단치 분포 (Generalized extreme value)의 긴꼬리 형태 (Fréchet type)를 보여준다. 둘째, 제안된 모형을 통해 추정된 최대 가능 손실은 선행 연구들의 추정량보다 대략 7배 큰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최대 손실 사건의 유출 건수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안적 모형을 기반으로 민관 합작의 사이버 재보험 모델을 제안하였다.</p>			
Memo				

발표자	성명	남상욱		
	소속	서원대학교	희망 세션	리스크 관리
논문제목	한글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연안지역 재해위험관리		
	영문	Disaster risk management in coastal area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공동연구	이동근(서울대), 박상진(서울대)			
논문초록 (Abstract)	<p>연안지역은 기후변화 인한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 연안재해로부터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연안도시가 발달하여 각종 해일, 태풍, 파고로 인한 피해가 잦으며 앞으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장동호 외, 2008; 육근형 외, 2011; Yoo et al, 2011).</p> <p>따라서 이 연구는 근래 데이터 분석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및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IPCC AR5에서 언급하는 노출과 취약성의 개념을 적용하여 리스크 평가를 하고자 한다.</p> <p>이 연구는 연안지역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침수 위험지역을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안지역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평가와 리스크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p>			
Memo	리스크관리학회 보험계리연구지원			

발표자	성명	송성주		
	소속	고려대학교	희망 세션	리스크관리
논문제목	한글	예측모형 잔차의 다변량 분포 적합을 통한 미세먼지 리스크 관리		
	영문	Risk management of fine dust by multidimensional modeling of prediction errors		
공동연구	조경상(오브젠)			
논문초록 (Abstract)	<p>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미세먼지가 자유로운 옥외활동을 방해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정확한 측정으로 양질의 자료를 축적하고 최적의 모형적합을 통해 미세먼지를 잘 예측하여 우리 생활과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자료와 <math>O_3</math>, <math>CO</math>, <math>SO_2</math>, <math>NO_2</math> 등 다른 대기오염 자료, 기타 기상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변수들을 이용하여 다변량 예측모형을 적합하고, 그 잔차를 이용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기상요인을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시계열모형을 적합하고 잔차들의 결합분포를 copula 모형을 이용하여 적합하였다. 이렇게 얻은 잔차의 분포에 적절한 설명변수의 값을 결합하여 다변량 대기오염 자료의 특정한 선형결합이나 극단값 등에 대한 조건부 분포를 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VaR 등 리스크 측도를 구할 수 있다.</p>			
Memo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9 연구지원사업 과제			

## 세션VI 연금





발표자	성명	이동열		
	소속	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박사과정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하에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에 따른 투자기회비용		
	영문	Cost of Shareholder Eng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under Short-Swing Profit Rule		
공동연구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논문초록 (Abstract)	<p>자본시장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특정 주식의 투자지분이 10%가 넘는 주요 주주를 내부자로 간주하여 그 주식에 대한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특례가 적용되어 지분이 10%가 넘더라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특정 주주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하게 되면 내부자로 간주되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주권행사 결정에 있어 이 제도에 의한 투자기회비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주주권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기댓값을 포트폴리오 레벨에서 closed form으로 도출한다. 이 기회비용은 총 세 가지 요인: 1) 액티브 수익의 미실현, 2) 새로 유입된 자금을 해당 주식에 투자할 수 없는 점, 그리고 3) 포트폴리오 비효율성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분해하여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연금의 경우를 기반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비슷한 규제 환경에서의 다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p>			
Memo				

발표자	성명	김대환		
	소속	동아대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영문	Are Qualified and Non-qualified Personal Pension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공동연구	이봉주(경희대)			
논문초록 (Abstract)	<p>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연금의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수요함수를 비교.분석하는 동시에 SUR모형을 활용해 두 상품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p> <p>분석 결과,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중 하나를 가입하면 다른 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두 상품 간 납부하는 보험료 역시 역(-)의 관계를 보였다. 즉 국내 소비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을 대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수요함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금저축은 임금근로자가 선호하고 연금보험은 자영업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타났으며, 동일한 소득수준이라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오히려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재원을 마련하려는 선호가 강했다.</p> <p>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생명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들과 정책당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판단되며, 향후 장기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두 개인연금상품의 가입시점까지 고려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p>			
Memo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연구 지원 과제			

발표자	성명	이봉주		
	소속	경희대학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기업의 퇴직연금의 적립이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Effect of Corporate Pension Funding on Credit Risk : Evidence from Korea		
공동연구	김영식(경희대). 이봉주(경희대)			
논문초록 (Abstract)	<p>학술적으로 몇몇의 연구들은 퇴직연금의 적립수준이 기업의 신용등급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퇴직연금의 적립수준이 하락할수록 적립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금흐름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신용위험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신용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 신용등급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지표는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고, 표본선택의 편의 등과 같은 문제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신용위험변수를 다변화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Hazard 모형이 퇴직연금의 적립과 관련이 깊으나, 시장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신용위험과 퇴직연금 적립수준과의 관계의 강건성을 확인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p>			
Memo	2019년도 한국보험학회 선도과제			

발표자	성명	최경진		
	소속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희망 세션	보험, 리스크관리, 연금, 사회보장, 건강보험, 디지털화, 계리, 금융, 기타 ( )
논문제목	한글	신탁방식 주택연금 확대를 위한 정책적 연구		
	영문	A Policy Study for Expansion of Trust-method Reverse Mortgage		
공동연구	전희주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부교수)			
논문초록 (Abstract)	<p>본 연구는 최근 주택연금의 배우자 수급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이용의향 요인을 최초로 분석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이용의향 요인 분석결과,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연금 가입 시 자녀와의 관계, 상속의향,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 주택연금에 대한 지식 등으로 나타났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대한 개념 및 장점을 수요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이 부모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자녀부담도 경감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 상담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p>			
Memo	.			

발표자	성명	강성호		
	소속	보험연구원	희망 세션	연금
논문제목	한글	퇴직연금 리스크 유형과 소송리스크 대응 방안		
	영문	Types of retirement pension risk and countermeasures against legal risk		
공동연구	류건식(보험연구원)			
논문초록 (Abstract)	<p>우리나라는 퇴직연금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 책임을 포함한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우려되고 있음</p> <p>이에 퇴직연금 관련 다양한 리스크 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이중 기금형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소송리스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p> <p>특히, 선진국에서 발생한 사례에서 소송원인을 퇴직연금 가입단계, 운용단계, 급부단계로 구분하되, 대부분 운용단계, 급부단계인 수탁자책임과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소송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p> <p>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 수탁자별 책임기준 강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p> <p>이러한 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가입자와 수탁자간 이익상충으로 인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p>			
Memo				



# 한국보험학회 연구윤리규정





#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

2014년 4월 29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학회지 연구윤리규정으로(이하 '연구윤리규정'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보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보험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저술해야 하며, 새롭고 독창적이며 어떤 언어로도 다른 매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논문을 투고한다.
- ② 저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사실대로 보고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등의 위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혹은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등의 변조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등의 표절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논문 작성에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논문 작성에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와 심사 기간이 중복된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중복게재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 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④ 논문 저자의 순서는 공동저자간의 합의 하에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학술지의 심사, 편집, 출판 규정을 따르며, 편집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1.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고 난 이후 혹은 출간된 이후라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 ⑥ 저자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는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3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평가를 의뢰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후에도 심사위원 실명을 기밀로 한다.
- ④ 심사 중인 논문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되 심각한 연구부정 혐의가 인정되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다.
  1.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등을 발견함으로써 저자의 윤리 규정 위반 혐의가 제기될 때, 편집위원은 제기된 문제를 검토한 다음 검토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의 소명을 서면으로 받는다. 검토 결과 정직한 실수로 판명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다. 그러나 부분적인 수정으로 논문을 바로잡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다.
  2.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편집위원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다.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저자와 협의하여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분적인 수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준의 심각한 표절 이라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은 논문이 출간된 이후라도 논문과 관련된 잘못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1. 논문 정정 -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산 또는 실험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우 원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정정문을 발행한다.
  2. 편집위원 고지 -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편집위원 고지를 통해 이 사실을 독자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잠재적인 부작용을 줄인다. 결정 즉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고지문을 탑재하고 직후 인쇄되는 학술지에 고지문을 게재한다.

### 제4조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 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삼간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질, 연구의 실험성, 이론 및 해석에 관해 엄격한 과학적 기준 및 연구 기준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간다. 심사평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심사 사실을 기밀로 하고, 심사 종료 후에는 심사 대상 논문을 분쇄하거나 컴퓨터에서 삭제한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편집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독립성과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7. 연구윤리위반에 대한 처리와 제재의 건의에 관한 사항

####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판정)

-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학회사무국에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처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논문제출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사 및 처리절차의 개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조사 및 처리의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및 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 ① 위원회는 학회 운영위원회에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한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학회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 종류로는 다음이 있다.
  1.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징계사항 통보
  2.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학회지 첫 호에 논문 철회문을 게재하여 연구부정행위 사실 공지
  3. 일정 기간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4. 일정 기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5. 해당 연구의 연구비 지원기관에 부정행위와 징계사항 통보
  6.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취소 또는 수정 요구
  7. 사법기관에 고발
- ③ 관련 기록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제10조(사후관리대책)

- ①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피조사자의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현저히 문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전항의 재조사에 따른 결과를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윤리 규정의 수정)

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사람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년도에 4월말 발간되는 『보험학회지』 심사 대상 논문부터 적용된다.